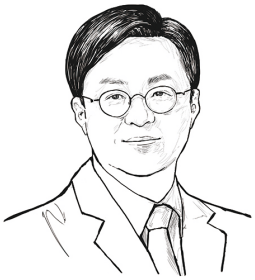

원종욱
연세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산재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

특례 적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

1964년 우리나라에 처음 산재보험이 도입되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당시 근로기준법은 16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었지만, 실제 산재보험법의 적용은 예외 규정을 두어 시행령에서 정한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당시 「산재보험법」에서 이 법의 목적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기업을 우선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적용 제외 사업장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8년부터는 상시 노동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함으로써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1] 2020년 말 기준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동자 수는 18,974,513명[2]으로 특수형태노동자를 제외한 전체 노동자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재보험 도입 시기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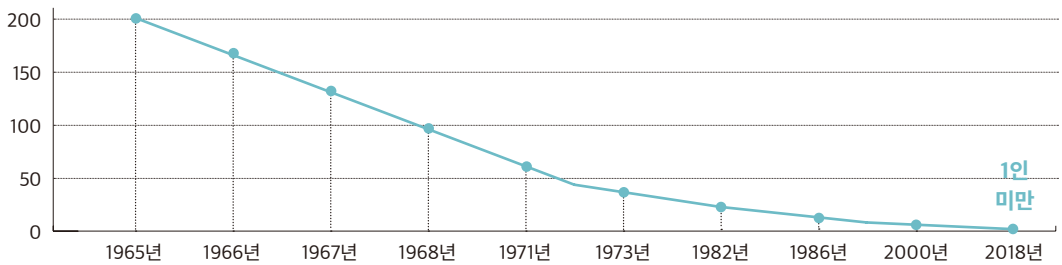

1)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Economic Incentives to improv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a review from the European perspective. (2010)

97.8%가 가입되어 있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91.5%가 가입하고 있다.[3] 따라서 산재보험 도입 당시 지적되었던 적용 범위가 좁아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다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한다. 또한 그동안 산재보험 가입에 문제가 있었던 특수형태노동자와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로 확대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산재보험의 당연가입과 임의가입

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가입 대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18년부터 1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당연적용사업장이다. 따라서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산재보상을 받는 노동자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의무 가입 대상이기에 당연히 가입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만약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적용사업장의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당연적용의 의미이다. 다만 당연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장은 사업주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하며 이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으며 대부분 임의가입할 수 있다. 이달에는 특례적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해 살펴본다.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적용

2021년 10월 6일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학생이 요트 바닥에 붙은 해조·조개류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작업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요트에 탑승한 관광객에게 안내하는 업무를 배우기 위해 현장실습을 나간 관광·레저 전공 학생이었다.[4] 이는 현장에서 업무를 익힌 뒤 취업해 바로 실무에 임하고, 조기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실습 중 사고를 당하는 학생들이 잦아지고 있다. 현장 실습 중 사고를 당한 학생들에 대한 산재보상은 어떻게 될까?

「산재보험법」 123조는 현장 실습 학생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실습 중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특성화고·특성화목적고(마이스터고)의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실습과 일을 병행하곤 한다. 이 학생들이 산재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 경우 임금총액은 법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받는 훈련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품으로 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훈련수당을 받는 현장실습생이 산재를 당할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5]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에 노동자로 보호받기는 어렵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다. 그러나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 중 노동자와 다름없는 업무를 하거나 더 힘든 일을 하기도 해 실습 중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1998년부터 현장실습생에

2) 근로복지공단, 2020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2021
3) 국가통계포털, 주제별통계-노동-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사회보험가입률
4) 강현석 <관광객 안내한다더니… 고3 실습생, '잠수작업'하다 사망> 경향신문, 2021.10.7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3조 4항 [시행 2018. 9.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2018.9.11., 일부개정]

대한 특례를 도입, 시행하게 된 것이다.[6]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현재 기술대학을 포함한 대학생을 비롯해 학원에서도 많은 학생이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들 또한 현장에서 언제 어떠한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 그렇기에 이 특례조항을 확대 적용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7]

학생 연구자에 대한 특례 적용 도입

대학교 실험실에서도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험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650명에 달했다.[8] 2020년 대학교의 이공계 연구실은 4만 9천여 개이고, 이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하는 종사자는 학부생 85%, 대학원생 9.3%로 매년 약 171건의 사고가 발생하지만, 사고당한 학생들은 노동자가 아니기에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학생 연구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추진하였다.[9]

대학 실험실의 학생 연구원들은 확실히 노동자가 아니다. 학생 연구원은 학과 중 실습하는 학생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들은 대개 조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교수들의 연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실험실의 허드렛일과 교수의 지시에 따라 실험을 맡아 진행한다. 따라서 이들은 대학 실험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칠 위험이 제일 크다.

2022년 1월 1일부터 학생 연구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10] 그간 많은 대학 실험실 사고로 인해 학생 연구자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됐고, 그 결과 2021년 5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 학생 연구자에 대한 특례 적용이 도입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학생 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월)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2022년 기준 학사 학위과정 30만 원, 석사과정 100만 원, 박사과정 125만 원이며 일 평균임금은 각각 10,000원, 33,330원, 41,660원이다.[11]

해외 파견 노동자의 산재 제도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해외 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해외 파견 노동자는 산재보험에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받아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해외출장 중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 그렇지는 않다. 해외 출장 중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따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 파견 노동자의 경우만 임의 가입 형태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출장자와 해외 파견자는 어떻게 구별할까? 단기 출장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고, 장기 출장인 경우는 급여나 업무 지시 등을 국내 본사에서 받는 경우는 해외 출장으로 보고,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 해외파견자로 볼 수 있다.

해외 지사나 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에 속한 해외 파견

6)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7) 박은정·정연택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규정에 대한 검토> 한국노동법학, 2018;65:161-191
8) 이동수 <끊이지 않는 대학 실험실 사고… 교수는 안전 교육 '뒷전'> 세계일보, 2020.10.21
9) 최원형, 정부 <대학연구실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의무 가입 추진> 한겨레, 2021.02.09
10) 「산재보험법」 제123조의 2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5 제1항 및 「산재보험법」 제123조의 2 제4항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시행 2022.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02호, 2021.12.30., 제정]

노동자는 산재 발생 시 해당 국가의 산재보험을 통해서 보상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산재보상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우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산재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해외파견자가 해당 국가의 산재보상을 받을 경우, 국내 노동자에 비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즉, 사업주가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임의가입)을 몰랐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등의 문제로 임의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외파견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장협정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해당 국가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파견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해외파견자가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당연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12]

중소기업 사업주와 무급가족 종사자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물론 사업주가 사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업주가 부담하고, 보험급여는 노동자가 받는다. 심지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보험 대상이 아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보면 노동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업주들을 많이 본다. 예를 들어 소규모 카센터의 사장은 일도 제일 잘하고 많이 한다. 음식점은 사장이 주방을 맡아야 잘된다는 말도 있다.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노동자들 못지않게 일을 많이 한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제정 당시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산재보험법」 이 개정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2020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13]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특례 가입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주가 산재를 당해서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으려면 먼저 노동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이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별도에 가입하지 않아도 당연적용되는 노동자와 달리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하지 않으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라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의 가족 또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즉,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들이 사업주를 도와서 무급으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이들 무급가족 종사자는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을 말한다. 이들은 특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14]

12) 박은정 <해외파견자와 해외출장자: 산재보험법 제122조 특례규정의 해석> 한국노동법학. 2018;65:238-242

13)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22조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시행 2020.1.7.] [대통령령 제30334호, 2020.1.7., 일부개정]

14) 「산재보험법」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03호, 2020.12.8., 일부개정]